

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관련 안내사항

□ 중계유선방송 관련 법규

- 법령 :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
- 규칙 :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
- 방송통신위원회 고시
 -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
 -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·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

 관련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(<http://www.kcc.go.kr> : “정책/정보센터”→ “법령정보”)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.

□ 사업운영 관련 주요 규정

-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

구 분	내 용	비 고
변경허가 (법15조)	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(법인만 해당)	
	개인사업의 법인 전환	
	개인사업의 양도	
	방송구역의 변경	○ 합병, 분할 등으로 인한 경우만 허가 방침
	방송채널의 변경(장치변경 또는 채널확대)	○ 31개 이하까지만 가능
	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설의 변경 또는 이전	
재허가 (법17조)	허가 유효기간(3년)이 지나서 계속 사업을 하 고자 하는 경우	○ 허가기간 만료 6개월까지 신청

-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
 -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시(법인인 경우만 해당)
 -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-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(법제15조제2항)
 - 대표자 변경시(법인의 경우만 해당)
 - 법인명 또는 상호 변경

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(※ H/E가 설치된 장소인 경우 허가 대상임)
-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시

 각종 허가, 승인, 신고 등을 위한 지정한 서식이 있으며, 서식은 “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” 별지서식을 활용하면 됩니다.

□ 관련기관

- 정부기관 : 허가, 신고 처리, 정책 등

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

(110-777) 서울 종로구 세종로 20 ; 전화 02)750-2454, 팩스 02)750-2469

- 산하단체 : 장소이전, 재허가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 검사
 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<http://www.korpa.or.kr>)

※ 지역본부 : 서울, 부산, 강원, 경기, 경북, 충청, 강원, 전남, 전북, 제주

□ 재허가 신청서 제출방법

- 신청서 원본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, 신청서 자료는 전자메일로 송부 후 전화요망
 - 방송통신위원회 주소 : 서울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담당
 - 전자메일 주소 : leolth@kcc.go.kr
 - 담당자 연락처 : 02-750-2454

□ 참고사항

- 재허가 신청서류 다운방법
 -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cc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뉴미디어정책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신청서류를 메일로 송부 예정
-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·평가 기준 : 「별첨」 참조

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· 평가 기준

□ 심사평가 방향

- 지난 재허가 기간에 대한 사업실적과 차기 재허가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심사
- 방송사업의 특수성 및 방송법령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반영하여 평가

□ 심사평가 방안 : 평가기준에 따라 5점 척도(수,우,미,양,가)로 비계량 평가

※ 시정명령 등 방송법령 위반사례 : 계량(감점)

□ 심사항목 및 배점(방송법 제10조, 제17조)

심 사 항 목	평가지표	배 점	비 고
1. 방송의 공적 책임·공공성·공익성의 실현가능성	비계량	150	
2. 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	비계량	200	
3.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	비계량	50	
4. 재정적 능력	비계량	50	
5. 기술적 능력	비계량	50	
6. 시정명령 등 방송법령 위반 사례	계 량	감점	
합 계		500	

□ 재허가 여부 결정

- 심사결과 3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‘재허가’ 하고, 30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‘조건부 재허가’ 또는 ‘재허가 거부’를 결정
- 30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%에 미달할 경우,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(서약서 등)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